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2. 6. 12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2년 5월 24일
- 나. 제출자 : 고기판 의원 외 7인
- 다. 회부일자 : 2012년 6월 4일 회부
- 라. 상정일자 : 제16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12. 6. 7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 제안설명자 : 고기판 의원 )

가. 제안이유

- 각종 학교의 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체육동호인이 생활체육 활동 등으로 장기간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가 부담이 되므로 학교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지원  
(안 별표 1(제4조제2항 관련))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조문 정비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노 상 옥)

-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체육동호인이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장기간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 납부에 부담이 되므로 학교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  -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4조제2항 관련 별표 1의 체육행사의 체육동호인 육성·지원의 대상 및 범위, 방법란에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 활동 등을 위하여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 하고 그 밖에 부분은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.
  - 학교시설 이용은 교육부령인 「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」에 근거하여 시·도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유지·보수·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학교시설 사용료는 2011년 10월 27일 제정된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운영됨.
  -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학교시설 사용료 부과기준 마련 등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2012년 3월 8일 「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여 학교시설 사용료를 인하하고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감면을 100분의 50 ~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70 ~ 100분의 80으로 확대하고 사용료와 별도로 징수하는 청소비, 전기료, 냉난방비 등의 관리비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료 이외에 별도의 실비징수를 금지하였음.
- 사용료 인하(1시간 기준)
- 체육관 10,000원 → 6,000원
  - 인조잔디 운동장 50,000원 → 40,000원

-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등의 장기사용(6개월 이상)의 경우 사용료 감면 확대

· 100분의 50 ~ 100분의 80 → 100분의 70 ~ 100분의 80

○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지역 주민이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학교시설을 사용하는 생활체육동호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.

#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2년 5월 24일

발 의 자 : 고기관 의원 외 7명

## 1. 제안이유

- 각급 학교의 시설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체육동호인이 생활체육활동 등으로 장기간 학교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가 부담이 되므로 학교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지원(안 별표 1(제4조제2항 관련))
- 법제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맞게 조문 정비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『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』
- 2) 『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시설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』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

다. 합 의 : 문화체육과 합의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별첨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제9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해당분야”를 “해당 분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”를 “위탁할 경우에는 해당”으로 한다.

제11조 중 “범위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12조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별표 1 중 체육행사의 체육동호인 육성·지원의 대상 및 범위, 방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[별표 1]

진흥사업대상(제4조제2항 관련)

구분	행 사 명	대상 및 범위, 방법	비고
체육행사	체육동호인 육성·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: 전국·시·도 단위 체육대회 및 지역 주민의 학교시설 사용료 지원 등</li> <li>- 내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국·시·도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별 연합회에 대한 참가비 지원</li> <li>·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수시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생활체육교실 등의 진흥) ① (생 략)</p> <p>②구청장은 기타 구민 문화예술·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또한 지역사회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진흥사업을 선별하여 적극 지원한다.</p>	<p>제3조(생활체육교실 등의 진흥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) ①제3조제2항에서의 진흥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p>1. ~ 8. (생 략)</p> <p>9. 기타 문화예술·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개최 및 지원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4조(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) ①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교육과목 등) ①제5조제1호 제2호 규정에 의한 교육 대상과목은 구민의 선호도, 내용의 다양화, 보급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며 대상과목은 별표 2와 같고, 그외 과목추가 선정은 구청장 방침으로 한다.</p> <p>② 삭 제</p>	<p>제6조(교육과목 등) ①----- ----- <u>따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삭 제</p>
<p>제8조(강사의 위촉) ①교실의 강사는 <u>해당분야</u>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</p>	<p>제8조(강사의 위촉) ①----- -- <u>해당 분야</u>-----</p>



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  
촉한다.

②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 
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0조(교실위탁운영) ①·② (생  
략)

③구청장이 교실의 운영을 위탁하  
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실의  
위치, 규모, 위탁조건, 기간 등 구  
체적인 사항을 문서로 정하여야  
한다.

④ (생 략)

제11조(위탁교실의 지원) 구청장이  
교실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  
산의 범위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  
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  
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위탁 취소) 구청장은 위탁  
기간중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  
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  
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2. (생 략)

3.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 
되는 경우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 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 
로 정한다.

-----  
-----.

②----- 범위-----  
-----.

제10조(교실위탁운영) ①·② (현  
행과 같음)

③----- 위탁할  
경우에는 해당 -----  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위탁교실의 지원) -----  
-----  
----- 범위-----  
-----.

제12조(위탁 취소) -----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그 밖에 -----  
-----

제13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  
에 -----  
-.

[별표 1]

진흥사업대상(제4조제2항 관련)

구분	행사명	대상 및 범위, 방법	비고
체육행사	체육동호인육성·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: 전국·시·도 단위 체육대회 등</li> <li>- 내용: 전국·시·도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별 연합회에 대한 참가비 지원</li> </ul>	수시

[별표 1]

진흥사업대상(제4조제2항 관련)

구분	행사명	대상 및 범위, 방법	비고
체육행사	체육동호인육성·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상: 전국·시·도 단위 체육대회 및 지역 주민의 학교시설 사용료 지원 등</li> <li>-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전국·시·도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별 연합회에 대한 참가비 지원</li> <li>·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지원</li> </ul> </li> </ul>	수시